

- 2022년도 제2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-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공고

2022년도 제2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2년 6월 7일
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

1. 채용분야 및 인원, 근무조건 등

가. 분야·인원

채용분야(직종)	채용유형	직무등급	채용인원	담당직무
시설관리원(조경)	공무직	사원급 (3급 1단계)	2	■ 조경 관리 업무 전반
청사미화원(미화)	공무직	사원급 (1급 1단계)	1	■ 청사 미화 업무 전반
	공무직(장애인)	사원급 (1급 1단계)	1	

※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(중복지원 시 무효처리)

나. 근무조건

- (정년) 만 60세(해당연도 도래 시 12월 31일 기준)
- (근무시간) 1주 40시간, 1일 8시간 (직종 특성에 따라 야간근로 가능)
* 일근자 근무시간은 09:00 ~ 18:00임 (청사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)
- (보수조건) 2022년 공무직 직무등급별 기본임금표에 의거 지급
- (1급 1단계) 월 1,831천원 / (3급 1단계) 1,977천원
- (복지후생) 4대보험 가입 및 청사 내 체육·의료시설 등의 복지시설 이용 가능
- (근무장소) 지방자치인재개발원 (전북 완주군 이서면 반교로 150)

※ 행정안전부 임금(보수)기준의 제·개정 및 분야별 상황에 따라 보수,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음

2. 채용요건(응시자격)

가. 공통사항

- (연 령)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만19세 이상으로서 공무원 정년(만 60세)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 - ※ 응시연령의 기준은 최종시험일(면접시험) 기준
 - ※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시 응시 가능
- (병역의무)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- (결격사유) 「행정안전부 공무원 등에 관한 관리규정」 제12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
결격사유
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-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출·퇴근이 가능한 자로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

나. 조정 분야 자격요건

- (일반조건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직무 등급 별 세부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
 - 해당분야 기술분야 자격증(기능사 포함)을 보유한 사람
 - 해당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
 - 해당 분야에서 근로한 경력이 있는 사람

직 급	기술자격 기준	학력 기준	경력 기준
사원급	■ 기능사 이상 자격 보유자	■ 고졸 이상 학력자 ■ 직업훈련기관 교육 이수자	■ 해당 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

○ (기술자격 기준)

분야	일반적 기준	기술자격 종목		
		기사 이상	산업기사	기능사
조경	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[별표2]의 직무분야 중 조경 및 농림어업 분야 기사, 산업기사, 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자	조경기사 종자기사 산림기사 시설원예기사 임업종묘기사 식물보호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	조경산업기사, 종자산업기사 산림산업기사, 식물보호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	조경기능사 종자기능사 산림기능사 원예기능사 임업종묘기능사

○ (학력 인정기준)

분야	학력 기준을 인정하는 관련학과		
	학사 및 전문학사	고졸	직업훈련
조경	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산림, 조경, 원예 등의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 또는 전문학사 취득자	공업계 및 농업계, 특성화고에서 산림조경원에 등 학과를 졸업한 자	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직업훈련기관에서 조경 계열 직업훈련 이수자

- ※ 해당분야 관련학과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인정(졸업증명서 등)
- ※ 직업훈련기관은 기관명, 교육명, 교육일수 등 인정 가능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, 훈련기관이 고용노동부 등록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인정 가능

○ (경력 인정기준)

분야	경력 요건
조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조경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 (근무기간·담당업무 명시,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유의) ※ 조경 분야 시공자격 면허(건문건설업 등) 보유한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■ 경력요건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,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※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,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(전임의 경우 전부,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)

- ※ 해당분야 시설 유지관리, 공사, 현장근무 등의 경력은 인정하되, 행정사원, 사무보조 등의 경력은 불인정(담당업무가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 필요)

다. 청사미화 분야 자격요건

직 급	채용 자격 기준
사원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체 건강한 여성 또는 남성으로 해당 분야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 자
사원급 (장애인 제한경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 자

3. 우대 요건 ※ 서류전형 시 적용, 공고일 기준 판단

가. 해당 분야의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

- 경력(재직)증명서 등 해당분야 실무경력 입증서류 제출 시 우대
 - ※ 증명서는 **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에 한해 인정함**
 - ※ 경력증명서상 상근 여부, 해당 분야의 근무기간과 근무경력임이 명시되어야 함 (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)
 - ※ 해당 지원분야와 관계없는 행정사원, 사무보조 등의 경력은 불인정
 - ※ 석·박사 등 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은 미인정
- 기술직종(조경) 응시자가 응시자격 요건 중 경력으로 지원한 경우,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제외
-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
 - ※ 해당분야 기술자격 응시자의 경우, 응시자격 이외 자격증만 인정 (2개 이상 자격증인 경우, 최고점 1개 자격증만 인정)

나. 저소득층 우대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

- 저소득층 우대
 - (근거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8조의2
 - (저소득층의 범위) 공고일 기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
 - ※ 기산일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며,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자격 유지 요건
 - (우대사항) 1차 서류전형 합격인원의 20% 범위에서 서류심사 시 우선 합격
- 취업지원대상자 가점
 - (관련근거)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, 동법 시행령 제48조, 별표8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
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 동법 시행령제 44조
 -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동법 시행령 제18조
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, 동법 시행령 제25조
 - 「고엽제 후유의증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 동법 시행령 제9조의 8
 - (가점사항) 1차 서류전형 시 만점의 10% 또는 5%를 가산
 - ①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 - ② 취업지원 대상자는 1개의 가산점만 적용됨
 - ※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(대표번호 1577-0606)에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, 가산비율을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·제출

4. 시험방법

가. 1차 서류전형

- 응시자를 대상으로 채용 예정 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충족 여부 확인으로 면접시험 대상자 선발
 - 제출서류의 진위, 자격요건 충족여부, 응시자격 기준 적합여부 등 서면 심사
 - ※ (서류전형 기준)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, 관련분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
 - ※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,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

나. 2차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※ 서류전형과 별개

면접시험 세부기준

- (면접방식) 대면·개별면접
- (평가내용)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, 다음의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평정
 - 정부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준법정신, 채용분야별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조직 내의 협력자세와 친화력, 분야별 직무에 대한 적극적 업무자세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 등
- (합격결정)
 - 평정결과 '상'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고, '상'의 개수가 같을 경우 '중'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
 - ※ 동점자 우선순위 : 1. 경력이 많은 사람, 2. 연장자 순
 - 제출서류 진위여부, 일반(공무원)채용신체검사서 확인을 통해 최종합격자로 결정
- ※ 불합격
 -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"하"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"하"로 평정하였을 때

5. 원서접수

가. (접수기간) 2022. 6. 13. ~ 2022. 6. 17.(5일간)

나. (접수처) (55365)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반교로 150,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정지원과 채용담당자 앞

다. (접수방법) 방문 접수 (응시서류 보완 제출시 우편 접수 가능)

- ※ (유의사항) 접수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(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발송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,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)
 - 등기접수증(스캔본)을 채용담당자(ckddus21@korea.kr) 메일로 송부(접수 누락 방지)
 - 접수번호(응시번호)는 원서 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예정
- ※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음 (중복/분할접수 불가)

6. 시험일정 / 장소

원서접수	서류전형 합격발표	면접시험	최종합격 발표
2022. 6. 13.(월) ~ 6. 17.(금)	2022. 6. 24.(금)	2022. 6. 29.(수)	2022. 7. 8.(금)

- 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 가능
- ※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, 시험장소 공고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홈페이지 및 개인이 제출한 연락처(문자메시지)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(불합격자 별도 통보 없음)

7. 응시자 제출서류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

< 공통사항, 필수제출 >

* 공고일 역산 3개월 이내 발급본

-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부
- 응시원서 1부 [별지서식 제1호]
- 자기소개서 1부 [별지서식 제3호]
- 직무수행계획서 1부 [별지서식 제4호]
-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 [별지서식 제5호]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[별지서식 제6호]
-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[별지서식 제7호]
- 공정채용확인서 [별지서식 제8호]
- 주민등록초본 1부(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, 병적증명서 제출 시 병역사항 미포함 가능)
- 채용 분야 자격증 1부(기술자격 지원의 경우 필수)
- 채용 분야 졸업증명서 등 1부(학력 지원의 경우 필수)
- 채용 분야 경력(재직) 증명서 1부(경력 지원의 경우 필수)
- 장애인 증명서·복지카드·상이군경회원증 등 사본 1부(장애인 제한경쟁 응시자 필수)
- 이력서 1부 [별지서식 제2호]
- 서약서 1부 [별지서식 제9호]
- ※ 공고일(2022.6.7.) 이후 발급본

< 개별사항,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>

* 공고일 역산 3개월 이내 발급본

- 채용 분야 경력증명서 1부(경력 우대 요건 해당의 경우)
- 채용 분야 관련 자격증(기술자격 지원 자격증 외)
- 경력·재직 증명 확인 연락처 1부
- (저소득층 우대 증빙)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·한부모가족증명서(주민센터 발급) 1부
※ 공고일(2022.6.7.) 이후 발급본
-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(국가보훈처 발급) 1부
※ 공고일(2022.6.7.) 이후 발급본

8. 기타(유의)사항

- 응시자는 자격요건·우대요건·담당예정업무 적합 여부 등을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, 연락불능,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.
(이력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명확히 기재)
-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,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.
-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(예: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)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, 자격증 및 경력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 및 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의 경우, 내용 기재와 관계없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
- 접수 마감 후 모집분야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,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-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 (합격자 개별통지)
- 취업지원대상자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해 우대합니다.
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 이후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.
반환을 원하는 경우 반환청구서 서식(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, 별표서식 10)을 작성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팩스(063-907-6003), 담당자 이메일(ckddus21@korea.kr)로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드립니다.
- ※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(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90일 이내)
-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내용은 재공고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채용 담당자(전화 063-907-5014)